

# 「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양진오 의원 외 7인

2. 찬 성 자: 강승수 의원 외 8인

## 3. 제안이유

-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00만 원 이하의 기종에 한해서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함

## 4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한 조건부 변경(안 제3조제1항제1호)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 -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는 3년, 그 외는 5년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.
- 중·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현황을 보면 300만 원 이하 소형 농업 기계가 2024년도에 약 98%, 2025년에는 약 80%를 차지하고 있음.1)
- 해당부서에서는,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농업인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며,
- ‘평가심사표’ 적용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현황(출처 : 구미시 농업정책과)

	전체 지원 대수	300만 원 이하	300만 원 초과
2024년	338대	331대 (98%)	7대 (2%)
2025년	287대	229대 (80%)	58대 (20%)